[별표 4]

단속 · 송치 절차도

내 사 — 혐의 없음(내사종결내사사건 기록철)

↓

범죄인지 — ○ 고소, 고발, 범죄행위자 및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보고

↓

입 건 — 범죄사건부에 등재

↓

임의수사

○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
○ 통역, 번역, 감정의 위촉
○ 공무소 기타 공공단체에의 사실조회
○ 수사의 촉탁
○ 임의제출품의 압수
○ 실황조사

강제수사

○ 영장에 의한 체포, 긴급체포, 현행범인 체포 구속
○ 압수, 수색, 검증
○ 증거보전
○ 증인신문의 청구
○ 감정유치, 감정에 필요한 처분
○ 통신제한 조치

↓

사건송치 검찰청)

○ 사건송치서, 압수물총목록, 기록목록, 범죄인지보고서
○ 기타 [신원보증서, 지문통지서, 범죄통계원표, 기소중지시(지명수매 또는 지명통지) 등]
○ 송치의견피의자 인적사항,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등은 받은 사실의 유무, 범죄사실, 적용법조, 수사종합의견, 기소여부에 대한 특사경 의견 등

↓

검 사 — ○ 검사실 사건부에 접수: 사건접수일자, 기록번호, 피의자의 이름, 죄명, 피의자의 신병〈구속 또는 불구속〉

↓

검사 수사

○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구속사건: 검사명의로 작성
○ 피의사실 부인시: 보완수사참고인조사·증거수집 등

↓

종 결

○ 공소제기공판청구, 약식명령 청구
○ 불기소기소유예, 혐의 없음, 죄가안됨, 공소권 없음, 각하
○ 기소중지, 참고인 중지, 공소보류, 이송